

제 1 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 사례 1 2019서울조정89·90 정정·손배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법적 성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신청인의 강연 내용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과거 신청인과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신청인은 반론 보도와 함께 성명과 사진을 기사에서 삭제해 달라고만 요청했고,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불법서적이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근거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 신청취지

신청인은 과거 언론중재위 조정 과정에서 반론보도 게재와 성명 및 사진을 삭제하는 것은 중재부의 권고였을 뿐 신청인이 요청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언론중재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강연 중 발언을 왜곡보도 했다며 정정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반론보도 및 사진 삭제는 신청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조정대상기사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 신청인은 강연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주장과 강연에서 언급한 사례 등에는 오류가 없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조정대상기사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를음을 인정해 정정보도 게재에 동의했고, 신청인의 강연 내용에 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A씨는 11월 <B>에 언론중재를 신청했다. 그는 <B>가 10월 보도한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요구했다.[중략]

A씨는 이름과 사진을 내려 달라고도 요구했다. <B>는 사실관계가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반론과 함께 사진 삭제 및 익명 처리를 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의를 신청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B>는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중략]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성경이 불온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강연마다 ‘동성애가 법제화하면 하나님이 불법이 된다’는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중략]

A씨는 2016년 총선 당시 ‘동성애·이슬람·차별금지법 저지’를 목표로 내세운 C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C정당의 ‘정강 정책 연설’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왜곡 정보를 버젓이 퍼트리기도 했다.[후략]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본지는 언론중재위 조정 과정에서 A씨가 반론보도와 함께 본인의 이름과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만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A씨가 차별금지법 통과 시 성경이 불법서적이 된다거나 동성애 비판 표현만으로 차별금지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연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언론중재위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확정된 결정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에 따르면 언론중재위 조정 과정에서 반론보도와 함께 본인의 이름과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은 당시 중재부의 권고에 따른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A씨는 강연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된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동성애 법제화’에는 동성애 처벌법 폐지·차별금지법 제정·동성애 옹호교육법이 통과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강연한 것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A씨는 차별금지법안의 ‘괴롭힘’이란 문구를 ‘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 해석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위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기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하고, 조정대상기사 하단의 보도문 제목과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처음 48시간 동안 보도문 제목이 해당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실제 이행 보도문

본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도했으나,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재위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수정했음을 알립니다.

※ 본 조정 기일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 사항을 수정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조정대상기사 본문을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게재함



## 사례 2 2019서울조정266 정정청구

민간 노인요양원의 운영 비리를 고발하는 보도에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요양원의 외관을 방영한 데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해당 장면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민간 노인요양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고수익을 낳는 사업으로 치부되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일부 민간 노인요양원의 운영비 횡령 비리 등 운영 실태를 보도하면서 “국가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자막과 함께 신청인 요양원의 외관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했다.

### ■ 신청취지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요양원의 전경을 무단으로 방영하여 신청인 요양원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돈벌이로만 시설을 운영한다는 오해를 받게 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조정대상보도에 사용된 일부 요양원 전경은 해당 보도와 무관하고 당사자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영한 것이다.
- 매매 컨설팅 업자의 요양원 수익 관련 발언은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실제 수익률은 매우 저조하다.

### ■ 조정결과

보도내용과 신청인 요양원은 무관하다는 정정보도 성격의 후속보도를 방송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 요양원 장면을 삭제하며 향후 재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 조정대상보도

사립유치원 비리와 꼭 닮은 일부 민간 노인요양원의 비리와 실태를 파헤친다.[중략]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 하나를 접했습니다. ‘요양원 3년이면 빚을 갚는다.’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전국에 노인요양원은 약 5,300개. 이곳에는 요양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노인요양원 안내판 여러 개가 눈에 띄니다.

이곳에 신축된 노인요양원은 무려 6개. 지금도 건물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노인요양원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창업교육. 3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 하지만 자리가 없어서 교육을 못 받을 정도입니다. 노인요양원을 인수할 때는 권리금을 포함해 큰돈이 들지만 이 돈은 금세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재 도중 만난 한 컨설턴트는 자신이 몇 년 간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며 통계를 낸 것이라며 우리에게 문서 하나를 내줍니다.[중략]

노인요양원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현행법상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심지어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요양원 수가 급증하면서 제도적 한계를 악용한 각종 비리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후략]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본 방송은 일부 민간 노인요양원의 비리 등 운영 실태를 보도하며, “국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란 자막과 함께 C노인요양원의 외관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은 방송 내용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프로그램 홈페이지 내 ‘알려드립니다’ 게시판 공지사항으로 위 보도문을 7일 동안 게재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 게시글로 유지한다.
- 홈페이지 내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면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및 TV클립 영상에서 신청인 요양원의 전체 외관이 노출된 장면 영상을 삭제하며, 피신청인 및 계열사의 방송 프로그램이나 IPTV 서비스 등에서 이 사건 해당 영상이 재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사례 3 2019서울조정684·685/686·687 각 정정·손배청구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보도에 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A씨가 신청인 B신문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A씨는 약정서도 보지 못한 채 B신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부수를 약정 판매해야 했으며 신문사-신문지국 간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신문 밀어내기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 신청취지

위 보도의 고발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조치를 받았고 공정위로부터 A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A씨의 허위 주장만을 토대로 신청인이 불공정 거래를 하고 '갑질'을 한 것처럼 허위과장·편파보도 했으며 정정보도 및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신청인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조정대상기사는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A씨의 일방적 주장이다.

#### ■ 조정결과

신청인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조정대상기사의 내용은 A씨의 일방적 주장이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 조정대상보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 불공정거래 논란이 벌어진 뒤 신문사에 '무혐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8월 1일 B신문사와 공급약정서를 체결했다. A씨는 “공급 계약은 본사·전임자·후임자 3자 계약으로 이뤄졌는데 본사에선 전임자가 해왔던 지대를 비롯한 모든 불공정 계약을 관행대로 떠넘겼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불공정거래에 이의제기 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A씨는 약정보증금으로 150만 원도 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약정서 전문을 볼 수 없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A씨가 확인한 약정서 전문에 적힌 공급 기준부수는 210부 이상이었다. 약정서 제3조 ‘공급부수 및 판매방법’에 따르면 신문의 공급부수는 을의 의사를 참작해 갑이 정하며 을은 이를 전량 판매해야 했으나 현실에선 B신문사가 보내는 부수를 일방적으로 받고 지대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중략]

결국 A씨는 신문판매연대를 통해 그해 8월 B신문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B신문사는 공정위에 보낸 답변에서 “지국 인수 후 부수확장을 통한 수익개선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본사 지대를 감액해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약정부수를 다 팔아 수익을 내야 할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의미다. B신문사는 또한 “적극적으로 운영수지 개선에 협조했으나 A씨가 일방적으로 미수를 발생시켰으며 관할구역 내 지국운영자가 본인 외에 없음을 약용해 無지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중략]

그러나 공정위는 B신문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B신문사가 실제 구독자수보다 많은 신문을 강제공급 해 발생한 신문대금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4호 등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무엇보다 “A씨가 계약체결일 당시 현재 공급부수만큼 공급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B신문사가 2015년 이후 실제 약정 부수보다 적은 부수를 공급하며 A씨와 사전협의 없이 신문 공급부수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갑을관계에서 발생한 ‘신문 밀어내기’를 ‘사전협의’로 받아들인 대목이다.[후략]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본 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무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B신문사가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A씨와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인 듯 보도했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B신문사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기사의 내용은 신문지국을 운영하는 A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게재면 초기화면에 위 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사례 4 2019광주조정29·30, 2019광주조정31·32(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기관의 홈페이지와 시설 외관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영했어도 보도에 당사자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방송하기로 합의한 사례

##### ■ 보도내용

지역방송사인 피신청인은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학교수련 활동은 불법인데도, 적법한 수련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신청인 수련원이 인근 리조트를 위탁 사용하면서 수십 곳의 학교 수련활동을 진행했다며, 신청인 수련원이 위탁 사용하는 리조트 건물과 수련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등을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 신청취지

신청인 수련원은 위 보도가 이뤄지기 전에 담당 기자를 만나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서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수련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도 '미인증 시설'이라고 허위보도되어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정정보도와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신청인 수련원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13개의 인증을 받았고, 법정 안전관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 ■ 조정결과

심리 당시 피신청인은 일선 학교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기 위한 보도였고 해당 리조트 건물 및 홈페이지 화면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지역의 수련원은 신청인 수련원이 유일하며, 실제로 보도 이후 10여 건의 계약이 취소되었다며 반박했다.

중재부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단체가 리조트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숙박형 학교수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정보도와 함께, 신청인 수련원은 필요한 인증을 받아 법정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방송하는 조정안을 권유, 양 당사자가 이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학교 수련활동이 진행되는 A지역의 한 건물입니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 등록되지 않아 1박 2일 이상의 학교단체 수련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30여 개 학교가 이곳으로 1박 2일 이상 수련활동을 다녀왔습니다.[중략] 하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지난 2013년 태안 해병대캠프 사망사고로 ‘학교안전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수련활동은 콘도나 리조트가 아닌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지역에는 인증 받은 청소년 수련원이 24곳이나 있는데도, 일부 학교들은 이곳으로 수련활동을 다녀왔습니다.

A지역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리조트 등에서 수련활동을 금지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공문이 나온 이후에도 학교들은 버젓이 수련회를 가고 있습니다.[후략]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서 확인결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개인·법인·단체가 리조트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숙박형 학교수련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A지역 수련교육센터는 “본 시설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13개의 인증을 받았으며, 안전 관리 역시 법에 정한 바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진흥원에 보고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B뉴스> 프로그램에서 위 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본문을 낭독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위 보도문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하되, 자막의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하며, 낭독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면 상위 2번째 기사로 위 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영상과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다른 기사의 제목에 사용된 활자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이 한다.

- 위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조정대상기사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5** 2019서울조정957·958/959·960, 2019서울조정961·962(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폭행사건 관련자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보도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대학 운동부 감독인 신청인이 전지훈련 중 회식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A학생을 폭행했고, A학생 측과 합의에 이른 후에는 경기 및 훈련에서 A학생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실업팀으로 이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회식 당시 A학생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A학생의 부상은 신청인의 폭행이 아니라 자해에 따른 것이며, 해당 사건 이후에도 A학생의 출전기회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A학생의 일방적인 제보에 근거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1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A학생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A학생의 자해가 있었으며, A학생이 후배에게 신청인이 폭행했다는 허위증언을 교사했다.
- A학생은 사건 이후에도 경기 출전기회가 다수 있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내용에 허위사실이 없고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했을 뿐 악의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대학배구연맹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폭행사건 이후에도 A학생에게 출전기회를 부여했던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고, 신청인과 A학생 간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대학 운동 선수 A씨는 지난해 전지훈련 숙소에서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독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족이 올 때까지 2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방치됐고, 정수리 부위를 14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A씨 측은 감독의 회유로 합의를 써줬습니다.

해당 대학은 감독에게 서면 경고로, 대학연맹은 가벼운 출전 정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심지어 3학년이던 A씨에게 지방 실업팀으로 옮기라고 강요했습니다.

A씨 측의 민원 제기로 열린 B지역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당 감독에게 금품수수 혐의로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폭행 건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계 안건으로 다루지조차 않았습니다.

해당 지도자는 폭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본 방송사는 조정대상보도에서 “대학 운동부 감독이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선수를 구타해 부상을 입혔고, 이후 해당 선수를 경기나 훈련에서 배제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선수는 2018년 한 해 동안 개최된 27경기 중 출전정지된 3경기를 제외하고 23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감독은 “대학연맹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음으로 인한 감독과 선수 간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쌍방 또는 일방의 폭력사건이 아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방송사 뉴스 홈페이지에 스포츠 섹션 기사목록 우측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조정대상보도 본문 중 <이후 감독은 출전기회를 주지 않았고> 부분을 삭제한다.

## 사례 6 2019부산조정28 정정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감사결과를 잘못 보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 보도내용

A도시 B구(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를 발행하는 피신청인은 A도시 B구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2건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적발했는데, 신청인 법인이 자산취득비로 개인차량에 주유비를 지출하고 운영비로 직원수당을 지출하는 등 총 10건의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 ■ 신청취지

신청인 법인은 위 보도의 지적사항은 법인 자체 경비 집행건에 관한 것으로서 B구의 감사결과 통보서에도 이 같은 사항이 명시돼 있는데도 지방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잘못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B구의 감사 지적사항은 지방보조금이 아닌 법인 자체 경비에서 집행된 것으로서 법인 정기총회 및 이사회, 자체감사 승인을 받은 적정한 집행이었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신청인 법인 관계자가 감사 결과 확인서 내용에 동의해 서명까지 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는 보도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신청인 법인임을 알아볼 수 있어 당사자가 특정됐고, 신청인 법인 관계자의 서명은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 조정대상보도

A도시의 B구가 과거 방만하게 운영돼 온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나쁜 관행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6개 부서가 집행한 24개 단체 34개 지방보조금 사업, 마을기업 등 10개소와 관리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됐다.

감사 결과 지방보조금 사업에서는 22개 단체 84건, 마을기업 등은 9개소 38건 등 총 122건의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발견됐다.[중략]

매년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각종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C법인 역시 자산취득비 837만여 원으로 각종 물품을 구입해 방치하는가 하면, 업무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비 236만여 원을 지출하고, 운영비로 직원수당 546만여 원을 지출하는 등 총 10건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로 지적을 받았다.[후략]

##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본지의 조정대상기사 “매년 1억5천여만 원을 지원 받아 각종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B법인이 업무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비 236만여 원과 운영비로 직원수당 546만여 원을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 처리로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위 지적사항은 지방보조금이 아닌 법인 자체 경비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위 보도문을 신문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사례 7 2019서울조정1156 정정청구

신청인과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를 왜곡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 보도내용

A도시개발조합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된 위원회 조정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시 중재부가 A조합의 주장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일반 소송에서 ‘기각’에 해당하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고, A조합에게 취하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 ■ 신청취지

해당 조정심리 당시 신청인 조합이 금전배상을 강력하게 원하고 반론보도 게재만으로는 분쟁을 종결할 수 없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조정불성립결정이 이뤄진 것인데도, 마치 중재부가 피신청인의 기사를 진실한 보도로 판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조합원들에게 그릇된 사실을 전달하고 신청인 조합의 공신력을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해당 조정심리 당시 중재부가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여 신청인 조합에 취하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조정불성립결정은 피신청인의 보도가 진실해서가 아니라 양 당사자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 ■ 조정결과

이 사건 심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의사를 밝혀 신청취지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 조정대상보도

본지가 최근 A지역의 도시개발현장의 파행 등 부정행각에 대해 고발 기사를 연속해서 보도하자, 도시개발조합장 등 부조리 일행이 본지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재위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는 당사의 주장을 인정, 일반소송에서 기각에 해당하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도시조합 측에 중재신청 취하 명령을 내렸다.

A지역도시개발조합과 B지역주택조합은 본지가 도시개발사업 과정의 부조리한 과정과 B지역 주택조합의 허위 및 법리 위배 사항을 보도한 부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부에 정정보도 신청을 했다.[중략]

그러나 본지는 이에 대한 보도 원칙을 “기자가 확인한 사실의 기록,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인용의 기록, 정황적 근거에 의한 정리의 기록, 보도시점의 시사성 및 시의성에 따른 배경의 기록” 등에 대한 기사작성과 보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고, “이 기사들은 사회의 악으로부터 선량한 민생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익적인 사실 보도였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중재부 심리에서 도시조합측이 주장 하는 조합장 자격 문서와 관련해, 보관중인 자료에 편철된 인감증명 용도난의 법적효력 존·부존재 여부를 놓고 다투던 중 도시조합측이 내놓은 용도난 불필요 주장은 실정과 다른 점을 확인하는 등 도시조합의 허구 주장임을 결론 내리고 중재위는 중재불성립과 함께 도시조합 측에 중재취하 명령을 내렸다.[후략]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A지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본지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신청에서 조합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취하명령을 받고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조정심리 당시 중재부가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조합 측에 조정신청 취하를 명령한 사실이 없으며, 본지의 보도내용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불성립결정이 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보도방법

- 홈페이지 접속 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의 기사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12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나타나도록 유지한다.
- 위 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홈페이지 <헤드라인> 섹션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구별하여 게재한다.

**사례 8** 2019서울조정1238 · 1239/1240 · 1241 각 정정 · 손해청구

부친의 공로를 타인의 공로로 잘못 보도한 데 대해 서훈 주관 부처의 확인을 근거로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해양수산부가 ‘바다의 날’을 맞아 독도지킴이로 살다간 A씨와 B씨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추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A씨는 1963년 독도에 들어가 1981년 독도 주민등록지를 가장 먼저 옮기고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공로를, B씨는 A씨의 어선 선장으로 독도 생활을 시작해 2014년 독도 주민 최초로 국세를 납부해 독도의 국제법상 지위를 공고히 했고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을 직접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A씨의 유족인 신청인은 B씨의 공적사항으로 기재된 998계단을 설치한 사람은 신청인의 부친인 A씨고, 신청인의 2018년 독도 주민 신청건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의 유족이 독도지킴이로 생활하게 된다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여 독도 주민 선정에 혼동을 주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B씨는 A씨 어선의 선장으로 독도에서 생활한 사실이 없고,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을 직접 만든 사실도 없으며, B씨의 유족이 독도지킴이로 생활한다는 사실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물골’ 계단 설치 주체에 관해 분쟁이 있어 정정보도를 게재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해양수산부가 공적조서에서 ‘물골’ 계단 설치의 공적을 A씨의 것으로 인정했기에 정정보도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우리 땅 독도’ 수호에 앞장섰던 A씨와 B씨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추서된다.

해양수산부는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영원한 독도인’으로 살다가간 A씨와 B씨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추서한다고 밝혔다.[중략]

A씨는 1963년 독도에 들어가 함석으로 토담집을 짓고 어업 생활하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자 독도가 한국인이 사는 유인도임을 알리기 위해 1981년 10월 14일 독도에 주민등록지를 가장 먼저 옮기는 등 독도 수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 그는 독도 서도 전복 양식장, 수중 창고, 선착장을 손수 건립하고 동도 헬기장 공사에 참여하는 등 독도에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헌신했다. 1987년 태풍으로 무너진 독도 집을 복구하기 위해 대구에 자재를 사러 갔다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5년간 독도 1호 민간인 주민으로 생활했다.

A씨 어선의 선장으로 1960년대부터 독도 생활을 시작한 B씨는 20여 년간 아내와 함께 독도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4년 1월 독도 주민 최초로 기념품 판매 매출에 대한 국세를 납부해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공고히 했고 독도의 샘물인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을 직접 만들었다.[중략]

지난해 말 명예 퇴직한 B씨의 사위인 C씨는 31일부터 부인과 함께 독도에 들어가 유일한 주민인 장모를 모시고 장인의 뒤를 이어 ‘독도지킴이’로 생활하게 된다.[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보도내용

본 신문은 인터넷판 및 지면판 조정대상보도에서 A씨와 함께 훈장을 수여받을 예정인 B씨가 독도의 샘물인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을 직접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훈장 포상을 주관한 해양수산부에서는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을 직접 완공한 것을 B씨가 아닌 A씨의 공로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이다.

###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보도문을 신문지면 2면부터 10면 사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위 보도문 제목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제목과 본문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언론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위 보도문 본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박스 처리, 볼드 처리, 음영 처리 등 원 보도와 구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서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는 뉴스서비스사업자(네이버, 다음 등)가 게시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위 보도문 본문이 이어서 게재되도록 요청한다.



## 사례 9 2019전북조정40 정정청구

신청인이 수입·판매하는 목재펠릿 제품의 하역장면을 보도하면서 이물질이 섞인 불량제품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정보도하고 취하한 사례

### ■ 보도내용

지역케이블방송사인 피신청인은 A지역의 항구 하역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화력 발전소에서 발전원료로 사용하는 목재펠릿을 하역할 때 날림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자석에 붙기도 해 순수 목재펠릿을 사용한다는 당초 방침과 다르게 이물질이 섞이거나 값이 저렴한 바이오SRF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보도의 하역 장면에 등장한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해당 제품은 적법한 검사를 거친 목재펠릿이었고, 순수 목재펠릿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역 근로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출처 불명의 펠릿이 자석에 붙는 장면이 이어 신청인의 수입제품 하역 장면을 방영해 신청인의 수입제품이 저품질의 바이오 SRF로 오인받게 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순수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데 반해 폐기물 바이오 SRF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는 취지의 하역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 영상자료로 보도된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은 적법한 필요서류와 품질검사 과정을 거친 목재 펠릿 제품이었음이 밝혀졌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순수 목재펠릿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음에도 하역장 근로자들이 먼지로 고생하고 있어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차 심리 이후 양 당사자 간 입장 정리를 위해 기일을 속행했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 사건 조정은 취하했다.

## 조정대상보도

항구 인근의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목재펠릿이라는 발전원료입니다. 희부연 먼지가 트럭 위를 뒤덮습니다. 순식간에 먼지가 사방으로 퍼져 하역하는 근로자들은 마스크가 없으면 숨조차 제대로 쉬기가 어렵습니다.

순수 목재펠릿만 들어올 경우 날림먼지가 심각하지 않다는 게 근로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순수 목재펠릿과는 달리 목재가 자석에 달라붙고 한 눈에 봐도 이물질이 섞여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중략]

폐목재가 들어간 SRF는 가격이 목재펠릿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중략]

이에 대해 발전소 측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순수한 100%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SRF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규정에 맞는 목재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후략]

## 조정신청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방송은 뉴스 본방송, 해당 홈페이지 방송 다시보기 및 인터넷 블로그 상에 조정대상보도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의 배경 동영상 화면 가운데 특정 수입업체의 선박 영상은 이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편집 작업과정에서 착오로 오인하여 사용된 영상이었습니다.

또한 관련 동영상 자료로 보도된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은 의혹이 제기된 SRF가 아닌 필요서류와 품질검사 과정을 재차 거친 적법한 순수 목재펠릿 제품이었음이 밝혀져 보도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 사례 10 2019서울조정1479 · 1480/1481 · 1482 각 정정 · 손해청구

야구 경기 기록원인 신청인이 자녀의 타율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협회 공식자료에 따라 자녀의 경기성적을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지역의 B협회 소속 경기 기록원인 C씨가 자신의 아들 D군이 댄 A지역 권역 경기의 기록을 도맡아 했고, D군의 지난해 고교 주말리그 A지역 권역 타율이 타 권역 경기에 비해 높게 나타나 C씨가 경기 기록을 편파적으로 작성했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협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 신청취지

신청인은 수십 년 째 야구경기 기록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조작이나 편파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모든 야구경기는 실시간으로 전광판과 기록지를 통해 노출되고 있어 조작할 수 없는 구조일 뿐 아니라, 신청인의 자녀는 A지역 권역 소속으로 타 권역 경기에는 출전하지도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도 없다며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이 기록을 편파적으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실은 없다.
- 해당 기사는 고교야구의 출전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보도해 신청인과 자녀에게 피해를 줬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학부모가 자녀의 경기를 직접 기록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도의 '타 권역' 표현은 신청인이 기록하지 않은 타 지역의 경기를 일컬은 것이며 신청인에 대한 협회의 진상조사는 복수의 임원을 통해 거듭 확인한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타 권역'은 '전국대회'를 뜻한다는 정확한 의미와 함께 D군의 전국대회 성적을 정정하고 신청인은 협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A지역의 한 고교 야구선수 성적이 경기 기록원인 학부모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지역 B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 소속 경기 기록원 C씨가 자신의 아들인 D군이 뒀 경기에 기록을 편파적으로 작성했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이명을 요구한 협회 소속 한 임원은 “올해 대학을 진학한 E고교 야구부 출신 D군의 기록을 C씨가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협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아마추어 야구경기를 주관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의 선수기록을 보면 D군은 지난해 고교 주말리그 A지역 권역 12경기에서 타율 0.255(43타수 11안타)의 성적을 나타냈다. 하지만 타 권역 경기에서는 0.137(80타수 11안타)의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문제는 지난해 D군이 경기를 뒀 A지역 권역 경기의 기록을 C씨가 도맡아 했다는 것이다. 고교야구에서 선수 기록은 프로지명과 대학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C씨가 아들의 성적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후략]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A지역의 한 고교 야구선수 성적이 경기 기록원인 학부모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2018년도 해당 학생의 경기실적증명서에 따르면, 보도에 언급된 타 권역 경기는 전국대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확한 성적은 44타수 8안타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경기기록원인 해당 학부모는 “편파적 판정과 관련하여 협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지도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섹션의 기사목록 상단부에 위 보도문 제목을 24시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 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사례 11 2019경남조정66 정정청구

실제 제출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와의 통화만으로 준공서류가 위조됐다고 단정 보도한 데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를 결정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지자체와 B재단이 테마파크 개장 일자를 맞추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준공서류를 위조했고 이 과정에서 책임감리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준공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 ■ 신청취지

신청인 재단과 A지자체는 준공검사에 하수처리시설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개장 일자를 맞추기 위해 감리단에 압력을 행사하며 준공서류를 위조했다고 허위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지자체와 신청인 재단은 테마파크 하수처리시설을 준공처리한 사실이 없고, 하수처리시설은 정부에 신청한 준공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해당 테마파크 개장은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데다 몇 차례 개장일자가 미뤄지면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으로, 신뢰할만한 취재원의 제보를 토대로 현장 확인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실제 준공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의 통화만으로 '위조'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 정정보도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 보도 1

7,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C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의 개장이 울들어 수차례나 연기돼 의문이 증폭된 가운데,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A지자체와 수탁 사업자인 B재단(이하 '재단')이 개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위조된 하수처리시설 준공서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올 4월로 예정됐던 테마파크 개장이 계속 늦춰진 이유가 지금까지 지자체와 재단이 밝혀 온 '국도 미개통 및 안전성 점검'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수처리시설 공사의 부진 탓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중략]

취재 결과, 하수처리시설공사가 지난달 30일 당시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는 그보다 일주일 앞선 지난달 23일자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A지자체는 이날 제출된 책임감리의 준공승인원과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뒤 같은 날 이 준공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준공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테마파크 하수처리시설공사는 실제 공사 중인 상태임에도 서류상으로는 이미 준공 처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뜻한다.[중략]

이 공사의 책임감리사인 D엔지니어링 관계자에 따르면 감리계약기간이 지난 6월 25일로 끝나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7월 23일 준공검사를 해 줬다는 점에서 볼 때 A지자체와 테마파크의 '압력'이 행사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A지자체와 B재단이 당초 올 4월 테마파크를 개장한다고 발표했다가 6월 → 7월 26일 → 9월 초로 계속 말을 바꾸면서 '남 탓'(국도 미개통과 안전성 문제 점검)을 해 온 데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후략]

### 보도 2

A지자체와 B재단이 수차례 연기 끝에 9월 초로 최종 발표한 테마파크의 개장일정에 맞추기 위해 주요 공사가 끝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공사를 준공 처리토록 한 사실을 계속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중략]

본지가 현장 취재한 지난 7월 25일까지도 관로매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책임감리는 이 공사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데 따른 준공조서를 7월 23일 발주처인 재단과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짜는 지자체가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행계획의 승인권자인 정부부처에 대해 각종 준공조서를 제출하면서 '실행계획대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시설물 설치가 끝났으니 오는 9월

초에 테마파크를 개장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준공확인을 신청한 시점이다.

현장 사정에 밝은 한 취재원은 책임감리사가 지난 6월 25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그것도 주요 공사가 끝나지 않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승인을 7월 23일자로 해 준 배경에 대해 재단의 '압력'이 작용했음을 증언했다.[중략]

그런데도 재단과 지자체는 "개장일자 맞추려 허위 준공서류를 사용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사실 은폐를 위해 '꼬리 자르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두 기관은 지자체 의회에 대한 진상보고 및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감리단이 7월 23일 준공검사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를 아직 재단에 통보하지 않아 준공 미처리 상태"라며 "또 하수처리시설은 이번 정부 준공확인 신청에서 제외했으므로 서류상으로 이미 준공 처리됐다는 기사는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보도내용

본지 조정대상기사 1 및 조정대상기사 2에서 A지자체와 B재단이 개장 일자를 맞추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관련 준공서류를 허위로 위조하여 제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B재단 및 A지자체에서 준공 신청할 때에 하수처리시설은 제외되었으므로, 하수처리시설 관련 준공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면 기사목록에 통상의 기사목록 제목 크기로 위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하고,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사례 12 2019제주조정11 정정청구

기사 본문은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기사 제목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를 결정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공연예술인들의 축제인 A축제를 주관한 B협회가 전년에는 팀당 200만 원씩 지급하던 쇼케이스 공연비를 올해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협회 회원사 및 관계자들에게는 수억 원의 숙박비를 제공했다며 B협회가 공연예술팀을 상대로 ‘갑’의 행세를 했다고 지적했다.

### ■ 신청취지

신청인 협회는 A축제 당시 쇼케이스 공연은 국고 지원 사업인 관계로 이중 지원이 불가해 공연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모 단계부터 사전 공지해 모든 팀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축제에 참여했고, 쇼케이스 공연팀을 제외한 모든 공연비는 전액 집행됐는데도 ‘공연비 0원’ 제목 표현으로 인해 단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A축제의 쇼케이스 공연은 국고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쟁형태의 공연이라 공연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했다.
- 쇼케이스 공연을 제외한 모든 공연은 공연비를 지급했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위 기사에 앞서 보도한 기획기사에서 신청인 협회의 입장을 반영해 쇼케이스 외의 공연은 공연비를 지급한 사실을 이미 보도했고, 위 기사의 제목 표현과 달리 본문에서는 공연비 부지급 대상 공연을 ‘쇼케이스 공연’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심리 결과, 위 기사 제목은 신청인 협회가 모든 공연에 대한 공연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관계자들에게 호화 리조트 숙박비를 지원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A축제는 ‘공연유통 활성화, 공연 문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축제다. 따라서 공연을 펼치는 예술인들은 이 축제의 ‘꽃’이며, 이들이 없다면 축제 또한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A축제는 분명 공연예술이 주가 되는 축제인데, 쇼케이스 무대에선 35개 공연팀이 공연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한 점은 이와는 정반대로, 축제를 주최한 B협회 회원사인 전국 각지의 회관 및 공연장 관계자들에게는 4인 1실, 리조트 숙박의 기회가 제공됐다는 사실이다.

올해 축제에 참여한 35개의 쇼케이스 공연팀은 공연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땀 흘린 푼 못 받고’ 공연을 펼친 것이다.[중략]

작년 A축제 예산 9억1600만 원 중 관계자 숙식비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됐다.

작년 A축제의 경우, B협회는 쇼케이스 공연팀당 200만 원 수준의 공연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쇼케이스 공연팀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반면 관계자들에게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했다.[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보도내용

본보는 「관계자 숙식비는 ‘억’단위, 예술팀 공연비는 ‘0원’인 A축제」 제목의 기사에서 A축제를 주최한 B협회가 회원사 및 관계자들의 숙박비로 2억여 원을 집행한 반면, 쇼케이스 공연을 펼친 35개 공연팀에게는 공연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축제에 참여한 공연팀 중 쇼케이스 공연팀을 제외한 모든 공연은 공연비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위 기사 제목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 대해 B협회는 쇼케이스 공연은 국고의 이종 지원이 불가해 공연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모 당시 모든 공연팀에게 사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기획특집면에 48시간 동안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 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할자 크기와 같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 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상자 처리하여 이어 게재한다.

### 사례 13 2019부산조정61, 2019부산조정62(병합) 각 정정청구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A지역 대학 교수들의 친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출연자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그 중 한 명인 신청인의 전공이 ‘한국근현대사가 아니라 미국 정치학’이라는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신의 전공이 한국근현대정치사임에도 미국정치학이라고 소개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보도됐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신청인의 전공은 미국정치학이 아니라 한국근현대정치사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출연자의 발언을 진행자가 정정한 바 있고, 토론프로그램의 출연자 발언으로 인한 책임은 방송사가 아닌 출연자 개인에게 있다고 항변했으나, 중재부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출연자의 발언을 바로잡는 형식의 조정안을 제안했고, 양 당사자가 이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 조정대상보도

패널(연구소 대표): 말씀 중에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끼리 그렇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 못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역사적인 근현대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본인도 사실은 전공이 미국 정치학이시거든요.

진행자: 박사학위를 그렇게 받으셨죠?

패널(연구소 대표): 근현대사가 본인의 전공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뭐, 고도로 훈련된 분들만이 해야 된다는 건 본인 말씀의 취지에도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을 오히려 선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지난 N회차 방송에서 A지역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교수의 전공이 미국정치학이라는 패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B교수의 전공은 한국근현대정치사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보도방법

- 조정대상 프로그램에서 위 보도문을 해당 코너 시작 직전에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표시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페이지에 위 보도문을 낭독한 동영상을 게재한다(해당 동영상도 통상적으로 조정대상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도 게시한다).

## 사례 14 2019서울조정2133 정정청구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제보자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보도한 데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단체급식업체인 A사가 D국으로부터 수입해 유통한 냉동 수산물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는데도 익히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대응하고 오히려 문제제기한 영양사를 해고했으며, 해당 영양사가 허위사실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생충 수산물 유통 사실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 ■ 신청취지

위 보도 이후 신청인 업체는 제보자인 영양사가 수개월 간 신청인 업체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해 유죄가 선고되어 해고했고, 해당 영양사가 문제를 제기한 당일 모든 제품을 전량회수 및 폐기처분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관해 피신청인에게 정정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해 이 사건 조정을 신청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A사는 해당 영양사를 냉동 수산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상습협박 및 공갈의 범죄이유로 징계 해고했다.
- A사가 구매한 D국산 수산물은 통과과정에서 검역을 거쳐 인체에 무해한 상품으로 적법하고, 이물 발견 당일 전량회수 및 폐기처분해 실제 시중에 유통한 사실은 없다.

### ■ 조정결과

심리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구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영양사의 범죄 행위로 해고했다는 사실은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그밖에 A사의 사후 대응방식 및 해당 수산물의 적법성 등에 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업체 A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 급식업체에 기생충 수산물을 유통하고도 그것이 문제되자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9월 A사에서 납품받은 식재료로 단체급식을 조리하는 조리원 B씨는 수산물을 손질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수산물의 곳곳에서 기생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12월에도 계속됐다. B씨와 당시 해당업체 담당 영양사 및 다른 조리원들은 경악을 하고 A사 측에 반품을 요청했다. 해당 수산물은 C수산에서 수입하는 D국산 냉동수산물로 A사가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있었다.

무려 세 번이나 반품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기생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납품하는 식재료에 기생충이 발견되면 문제가 된 수산물을 조사해 납품을 중단해야하는 게 유통회사의 책무인데 회사 측은 오히려 문제제기한 영양사를 타박했다. 오히려 회사 측에서 영양사의 입을 막으려했다. 게다가 해당 문제를 제기한 영양사를 해고하고 기생충 공치 문제를 한 직원의 일탈로 덮으려고 했다.[중략]

본지 취재팀은 당시 기생충 수산물 사건에 대해 A사 측에 물었다. A사 측은 처음에는 “당사는 기생충 수산물을 유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 증거는 당시 물의를 일으킨 영양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영양사는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후략]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단체급식업체 A사가 D국산 수산물의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직원을 해고했고, 인체에 위대한 수산물을 유통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사는 협박 등의 이유로 관련 직원을 징계 및 해고한 것이고, 법원도 해당 직원의 협박 및 공갈죄를 인정하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A사는 이물 발견 당일 전량회수 및 폐기 처분해 실제 시중에 문제된 수산물이 유통된 사실이 없고, D국산 수산물도 통관 과정에서 검역을 통과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적법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특집/기획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칸 이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및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